

광명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

제정 2008. 8. 11 훈령 제274호
개정 2010. 3. 26 훈령 제295호
2010. 12. 15 훈령 제297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4. 8. 14 훈령 제338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5. 11. 4 훈령 제361호(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지방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일부개정 2018. 9. 4 훈령 제400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9. 12. 20 훈령 제411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5. 7. 4 훈령 제45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립예술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약) 단원으로 입단할 때에는 광명시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3조(성실의무)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공과 사를 불문하고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복종의 의무) 단원은 임무를 수행할 때 단장의 직무 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조(출연금지) ① 단원은 단장이 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외부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단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 및 공익기관의 요청
2. 비영리 목적의 공연

3. 교육 및 연구목적의 공연

4. 특정 종교의 선교 목적이 아닌 순수 자선 음악회

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단원이 외부공연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부출연신청서를 10일 전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외부공연) 시립예술단이 국내외 초청 및 방문공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출장단원) ① 단장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단원은 해당 임무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출장 단원이 그 출장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단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2장 근무시간

제9조(근무시간) ① 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1주 2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 단원의 근무시간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7. 4>

② 단원의 교육,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근무시간을 단장이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출연하는 단원의 근무시간은 공연 때마다 단장이 정한다.

④ 단장은 공연에 출연한 단원에 대하여 공연 종료 후 다음 날을 휴무로 할 수 있다.

⑤ 단원의 복무에 관한 감독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한다.

제10조 삭제 <2025. 7. 4>

제3장 휴가

제11조(휴가의 종류)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25. 7. 4>

② 단원의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개정 2025. 7. 4>

제12조(연가) ① 단원은 공연에 지장이 없는 기간을 정하여 연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②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5. 7. 4〉

[제목개정 2025. 7. 4]

제13조(병가)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가를 초과하는 일수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 등으로 다른 단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단원이 공무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공가) 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② 단원이 공연 및 공연연습과 관련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공상처리를 한다.

제15조(특별휴가) ① 단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에서 정하는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태아검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5. 7. 4〉

③ 여자단원은 매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무급으로 매월 1일의 여성 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5. 7. 4>

④ 공연에 출연한 단원에 대하여는 공연종료 다음 날 필요에 따라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육아휴직) 단장은 단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휴직) 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상 또는 정신 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적인 해외연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제1항제2호의 휴직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휴직기간 동안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를 초과한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제4장 공무 해외연수 등

제20조(해외연수) ① 단장은 예술단의 기량향상과 국위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원에게 1년 이내의 해외연수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② 해외연수기간의 보수는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월액과 예능연구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외연수단원은 해외연수기간의 3배의 기간을 예술단에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4>

④ 제3항에 따른 의무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외연수기간에 지급된 보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해외여행) 단원이 개인사정으로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단장은 1개월의 범위 안에서 무급으로 해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장 평정

제22조(평정방법 등) ① 단장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평정을 근무평정과 실기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평정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평정을 50점, 실기평정을 50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예술단의 지휘자 및 감독은 평정에서 제외하고 단무장, 반주자는 근무평정만 실시한다. <개정 2010. 3. 26, 2025. 7. 4>

④ 출산, 질병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할 수 없는 단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평정시기) 단원의 평정은 매년 12월 중에 각 예술단별로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원이 평정에 응할 수 없는 등 평정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휘자 및 감독의 요청에 따라 단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6, 2025. 7. 4>

제24조(심사위원) 평정을 위한 심사위원은 각 예술단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정시기 5일 전까지 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7. 4>

제25조(평정등급) 평정의 등급은 수·우·미·양·가로 하며, 등급의 평정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평정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26조(평정결과의 반영) 제25조에 규정된 평정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개정 2010. 3. 26, 2025. 7. 4>

1. 평정결과 평정등급이 “수”가 2회 이상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지휘자 및 감독의 추천에 따라 단장이 수석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실기 평정등급이 “양” 이하의 등급과 근무 평정등급이 “가”인 단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근무 평정등급이 연속하여 “양”을 받았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장 상벌

제27조(상훈) 단원으로서 임무에 충실하였거나 문화예술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큰 단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28조(경고처분) 단장은 단원이 연주연습을 태만히 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예술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경우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제29조(징계)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6, 2025. 7. 4>

1. 조례, 규칙 및 규정이나 직무상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단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4조에 따른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연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5. 무단이석, 무단지각이 월 4회 이상인 경우
6. 연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
7.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또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을 때
8. 제26조에 따른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하였을 때

제30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의 종류는 해촉, 출연정지,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처벌양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촉은 단원의 직을 면하며, 해촉일부터 3년간 단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2. 출연정지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연의 단원활동을 정지하며, 이 기간 동안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4.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자성하게 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간 호봉승급을 보류한다.

제3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광명시립예술단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징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③ 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및 징계대상이 된 단원이 소속한 예술단의 지휘자(감독),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위원일 경우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26, 2010. 12. 15, 2014. 8. 14, 2018. 9. 4, 2019. 12. 20, 2025. 7. 4>

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징계위원회의 권한, 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징계의 절차) 단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행한다.

제7장 보칙

제33조(단원증) ① 단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단원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해촉 시 단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4조(기록유지) 단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단원 기록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위임) 광명시립예술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26 훈령 제29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5 훈령 제297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명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을 “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③7 까지 생략

부칙 <2014. 8. 14 훈령 제338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정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광명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시민행복국장”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15. 11. 4 훈령 제361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지방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 4 훈령 제400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광명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시민행복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19. 12. 20 훈령 제411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명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2025. 7. 4 훈령 제45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 정 등 급 표

등 급	평 정	비 고
수	평균 90점 이상	정원10% 이내
우	평균 80점 이상 90점 미만	
미	평균 70점 이상 80점 미만	
양	평균 60점 이상 70점 미만	
가	평균 60점 미만	

※ 실기평정 및 근무평정 별도 구분

[별표 2]

처 벌 양 정 기 준

비위내용 비위유형	비위도가 매우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도가 중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도가 중 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도가 경 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1. 근무태도불량 또는 질서문란	해 측	출연정지 (1개월~3개월)	감 봉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해 측	출연정지 (1개월~3개월)	감 봉	견 책
3. 직장이탈	해 측	출연정지 (1개월~3개월)	감 봉	견 책
4.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 측	출연정지 (1개월~3개월)	감 봉	견 책
5. 불법집단행위	해 측	출연정지 (1개월~3개월)	감 봉	견 책
6. 선동 및 단체해단 행위	해 측	출연정지 (1월~3월)	감 봉	견 책
7. 기타 규정위반행위	해 측	출연정지 (1개월~3개월)	감 봉	견 책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0. 3. 26〉

서 약 서

본인은 광명시립예술단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단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인은 광명시립예술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으며, 단장 및 지휘자(안무자, 감독)가 지시하는 훈련이나 공연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여 공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단장의 승인 없이 광명시립예술단의 공연이 아닌 다른 공연에 출연하지 않겠으며, 외부출연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장승인을 얻어 외부출연을 하겠습니다.
3.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라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주 소 :

성 명 : (인)

광명시립예술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외 부 출 연 신 청 서

- 기 간 :
- 장 소 :
- 주최/주관 :
- 출연내용 :

「광명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외부출연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 속 :

주 소 :

신 청 인 : (인)

광명시립예술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0. 3. 26>

단 원 평 정 표

확인자 : 광명시립예술단장 (인)
작성자 : (인)

성명	직위	분야	근무평정(50점)			실기평정(50점)			총 점	비 고
			출결 (30점)	성실성 (20점)	소 계	실기 (40점)	연습도 (10점)	소계		

1. 단위 근무평정표

성명	직위	분야	근무상황(30점)								성실성(20점)				총계	비고
			1월			~	12월			소계	조직 생활	규정 준수	기여도	소계		
			결근	지참 조퇴	이석		결근	지참 조퇴	이석							

※ 결근 : -1.5 지참, 조퇴 : -0.5 무단이석 : -1
※ 기여도(근무 1년당 0.25점) + 예술단 발전기여

2. 단위 실기평정표

성명	직위	분야	실기도(40점)			연습도(10점)			총 점	비 고
			아리아 (30점)	시창 (10점)	소계	공연 (5점)	연습 (5점)	소계		

3. 농악단원 실기평정표

성명	직위	분야	실기도(40점)	연습도(10점)			총 점	비 고
				공연 (5점)	연습 (5점)	소계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5. 11. 4>

단 원 증

(전 면)

사 진
(5×4센티미터)

성 명

광 명 시

9센티미터

(후 면)

단 원 증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20 . . .

광 명 시 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6
센
티
미
터

(비고) 바탕은 노란색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 11. 4>

광명시립예술단원 기록표

사 진 (명함판) (5×7)			단 체 명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가족 사항	관계	성명	생년 월일	학력	직업, 직장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 직장
학 력	기 간		학교 및 전공과목	학 위	기 간		학교 및 전공과목	학 위		
	부 터	까 지			부 터	까 지				
경 력	기 간		근 무 처	직 위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부 터	까 지			부 터	까 지				
임 명 사 항	연월일	직책	임명구분	임명처	연월일	직책	임명구분	임명처		

승 급 기 록												
호	봉											
위	촉	일										
기록자	인											
훈 련	기 간		종 류	훈련기관	외국시찰 및 수학	기 간		종 류	훈련기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포 장 · 서 훈	연월일	종 류		시행처	징 계 · 형 별	연월일	종 류		발령처			
근 무 평 정			실 기 평 정			총 점			평정등급			
연월일	평정점	기록 자인	연월일	평정점	기록 자인	연월일	평정점	기록 사인	연월일	평정 등급		
기 록 사 항 확 인 란												
본 인						시 립 예 술 단 장						
본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서약함.						본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년 월 일						
직위 성명 (인)						확인자 광명시립예술단장 (직인)						